



상세설명: 성인 SLU/SSU 비자에 대한 재정보증인 서류

학생비자에 관한 재정보증인은 본인이나 부모 또는 제 3 자(혈연: 촌수로 삼촌까지) 중의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. 퇴직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분도 금융소득, 연금소득, 임대소득 등 소득원이 있으며 서류상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이 소득원이 있었거나 현재 소득원이 있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면 본인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. 소득관련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 납세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증명서), 은행잔액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제출하려는 통장의 금액이 부모 또는 제 3자가 준 것이면 부모 또는 제 3자가 재정보증인이 되어 합니다.

만약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며 어머니가 재정을 관리할 경우에는 아버지 성함으로 받은 소득관련서류와 어머니명의로 된 잔액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준비하고 재정보증서에는 두 분의 신상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. 단 부모님 외 제 3자로 재정보증인을 세울 경우에는 한 사람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즉삼촌이 소득금액증명서 보증인 그리고 어머니가 잔액잔고증명서 보증인일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.

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재정보증인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도 비자 신청인의 스페인 체류경비를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 서류상에 나타나면 됩니다.



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정보증인일 경우:

1. 재정보증서: 주한스페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스페인어로 타자작성 후 재정보증인이 공증사무실에서 서명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.
2. 소득관련서류: 작년도 또는 올해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 납세증명 또는 회사 월급증명서. 아니면 세무서가 발급한 작년 또는 올해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증명서 (아포스티유 필수)
3. 잔액잔고관련서류: 은행/보험/금융에서 발급한 잔액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3개월치

아버지와 어머니가 재정보증인일 경우:

1. 재정보증서: 주한스페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스페인어로 타자작성 후 재정보증인이 공증사무실에서 서명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.
2. 소득관련서류: 작년도 또는 올해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 납세증명 또는 회사 월급증명서. 아니면 세무서가 발급한 작년 또는 올해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증명서 (아포스티유 필수)
3. 잔액잔고관련서류: 은행/보험/금융에서 발급한 잔액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3개월치

제 3 자가 재정보증인일 경우 (혈연: 촌수로 삼촌까지)

1. 재정보증서: 주한스페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스페인어로 타자작성 후 재정보증인이 공증사무실에서 서명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.
2. 소득관련서류: 작년도 또는 올해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 납세증명 또는 회사 월급증명서. 아니면 세무서가 발급한 작년 또는 올해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증명서 (아포스티유 필수)
3. 잔액잔고관련서류: 은행/보험/금융에서 발급한 잔액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3개월치
4. 비자 신청자님의 부모님 (두 분) 명의로 발급한 소득관련서류 (아포스티유 필수)
5. 비자 신청자님의 부모님 (두 분) 명의로 발급한 잔액잔고관련서류